

1. 개정이유

외국인등록증 진위 여부의 확인 규정과 외국인의 성명·체류지 또는 체류지 변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열람·교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절차 마련
(안 제72조제16호 및 안 제75조의2 신설, 안 별지 제138호의4부터 별지 제138호의7 서식 신설, 안 별표 5의3 신설)

-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기재사항, 열람·교부 신청 절차 및 수수료 등을 정함

나. 출입국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에 관한 절차 마련
(안 제75조의3 신설, 안 별지 제138호의8 신설)

-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진위 확인의 범위를 사진·인적사항·체류자격·체류기간 등 외국인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으로 한정하는 한편, 진위확인에 필요한 신청 서식을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가.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1건 1회 300원

나.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 1통 400원. 다만,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① 법 제88조의3에 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나 읍·면·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이 조에서 “열람·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38호의4 서식을 말하며,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의4 서식에 별지 제138호의5 서식을 첨부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 ④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의6 서식과 같다.
- 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기재사항은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로 한정한다.
- ⑥ 열람·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건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여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30건(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 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다.
- ⑦ 열람·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8호의7 서식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① 법 제88조의4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기관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②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진위확인 목적, 필요

성, 보안관리 대책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8호의8 서식 신청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 사항을 검토한 후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은 법무부가 보유한 자료와 요청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비교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며, 진위확인 범위는 사진, 인적사항, 체류자격, 체류기간 등 외국인등록증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별표 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38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138호의8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신청 자격에 관한 입증서류

(제75조의2 제2항 관련)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	입증서류
공통	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나. 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 법인·단체 소속 직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원증 등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대표자의 신분증명서(대표자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날인 후 제출)와 법인인감 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1. 법 제88조의3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이나 세대원: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임차인 본인이나 세대원: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법 제88조의3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가. 소유자 본인: 등기사항증명서, 등기필정보, 건축물 대장 등 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임차인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차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매매계약자 본인: 매매계약서 등 매매계약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임대차계약자 본인: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에 관한 경매 일시 및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신문공고문 등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이 경매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	신용조사의뢰서,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또는 감정평가의뢰서
5.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가 나타나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또는 대출약정서 등 근저당 설정 관계 서류
6. 법 제88조의3제2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법원장이 발행한 현황조사명령서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신청 내용	체류확인서 열람 []	체류확인서 교부 []
-------	--------------	--------------

개인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법인·단체 신청인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방문자 성명	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번호 연락처

열람 또는 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용도 및 목적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부칙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에 따라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읍·면·동의 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제출 서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 따른 입증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 정보 조직의 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기관 상황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위임장

위 신청인에게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자 (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위임한 자 (법인·단체)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소재지	

유의 사항

1. ‘서명 또는 인’ 란에는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서명을 할 때에는 자필로 신분증명서 상에 표기된 성명을 써야 합니다. 다만, 구술 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손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2. 법인·단체 신청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란에 대표자가 서명하거나 법인 인감(사용 인감을 포함합니다)을 찍습니다.
3. 동일 신청자가 동일 입증서류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해 외국인 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의4 서식 및 별지 제138호의5 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별지 제138호의4 서식과 별지 제138호의5 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확인(간인)이 있어야 합니다.
4. 외국인 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의 위임은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임대차 계약자 또는 매매계약자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받아 신청하는 자는 위임장과 위임한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와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신분증명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제출하여야 합니다)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 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일괄 신청서

열람·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열람·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	

유의사항

동일 신청인이 동일 입증서류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대해 외국인 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외국인 체류확인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	------

열람·교부 대상
건물 또는
시설 소재지

연번	성명	전입일자	비고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3, 부칙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에 체류지(변경)신고 되어 있는 외국인은 위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 읍·면·동의 장 및 출장소장

직인

유의사항

- 확인하려는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다르게 기재 된 경우에는 외국인체류확인서를 통해 해당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대장

- 기관명 -

번호	열람일자	열람·교부 신청자		열람·교부 대상자			열람·교부 사유
		성명(법인·기관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 번호)	주소	성명	등록(거소 신고)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증질지(80g/㎡)]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목 적				
필 요 성				
보안관리대책	※ 별첨으로 첨부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4, 부칙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3에 따라 외국인 등록증의 진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외국인 입국 및 체류와 관련된 허가 및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2조(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 ----- -----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6.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u> <u>분</u> <u>가.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1</u> <u>건 1회 300원</u> <u>나. 외국인체류확인서 교부: 1</u> <u>통 400원. 다만, 법 제88조</u> <u>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교</u> <u>부는 500원으로 한다.</u>
<u><신 설></u>	<u>제75조의2(외국인체류확인서 열</u> <u>람·교부) ① 법 제88조의3에</u> <u>따른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u> <u>는 교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신</u> <u>청서와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u> <u>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u> <u>이나 읍·면·동의 장 또는 출</u> <u>장소장(이하 이 조에서 “열람·</u> <u>교부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u> <u>신청해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38호의4 서식을 말하며,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5의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8호의4 서식에 별지 제138호의5 서식을 첨부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④ 외국인체류확인서는 별지 제138호의6 서식과 같다.

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기재사항은 특정 건물 또는 시설의 소재지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로 한정한다.

⑥ 열람·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건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여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30건(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 기간을 1일씩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⑦ 열람·교부기관의 장은 외국인체류확인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38호의7 서식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의3(외국인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 법 제88조의4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2. 금융기관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의 전기통신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②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을 요청하려는 자는 진위확인 목

적, 필요성, 보안관리 대책 등을
기재한 별지 제138호의8 서식
신청서를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
하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요청
사항을 검토한 후 외국인등록증
의 진위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은
법무부가 보유한 자료와 요청기
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비교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며, 진위확인
범위는 사진, 인적사항, 체류자
격, 체류기간 등 외국인등록증
에 수록되어 있는 사항으로 한
정한다.